

전주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나711 판결 [회사 인수 계약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나711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가소155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9. 15.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가소15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